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강정애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를 마칩

1. 의결주문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훈특별고용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공·사기업체(公·私企業體)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선택하여 고용할 것을 명하도록 하고 있는바,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보기간을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

보훈특별고용의 방식으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몰군경, 순직군경 등의 자녀의 연령 상한을 35세에서 39세로 상향하고, 취업지원 대상자인 전상군경, 공상군경 등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판정을 종합병원 외에 병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6. 21. ~ 7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의2제1호 중 “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(이하 “일반직공무원등”이라 한다)”을 “일반군무원”으로, “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”을 “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”으로 한다.

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”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「군무원인사법 시행령」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(이하 “일반직공무원등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제5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56조제1항 본문 중 “35세”를 “39세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57조제2항 본문 중 “36세”를 “40세”로 한다.

제59조제1항 중 “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”을 “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”으로 한다.

별표 6의3 제1호의 지급액란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6조의2 제1호”를 “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76조의3제1호”로 한다.

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보훈특별고용 취업지원 대상자 통보에 관한 적용례) 제55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고 같은 항 본문에 따른 통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제3조(채용비율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2조에 따라 종전의 별표 8의2에 따른 등대관리 직렬·직류의 일반직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취업지원 대상자가 계속 취업 중이면 해당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로 산정된 인원에 포함한다.

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(제50조제1항 관련)

구분		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		
		직 군	직 렬	직 류
1. 국가 공무원	가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조 제4항 및 「공무원임용 령」 제3조제1항·제4항	1) 행정	방호	방호
		2) 과학기술	간호조무	간호조무
			운전	운전
			위생	위생 사역
			조리	조리
		3) 우정	우정	우정
	나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조 제4항 및 「국회인사규칙」 제4조제1항	1) 행정	방호	방호
			안내	안내
		2) 기술	관리	차량관리
			조경	조경
			후생	후생
	다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조 제4항 및 「법원공무원규 칙」 제4조제1항	1) 사법행정	행정사무	행정사무
			속기	속기
			보안관리	보안관리 보안
			병기	병기
		2) 기술	조경	조경
			환경	환경
			관리	관리 운전
	라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조 제4항 및 「헌법재판소 공 무원 규칙」 제4조제1항	1) 행정	보안	보안
			교환	교환
		2) 기술	시설	시설조경

	마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4조 제4항 및 「선거관리위원 회 공무원 규칙」 제4조제 1항		방송통신	통신기술
			관리	운행관리
		1) 행정	방호	방호
		2) 과학기술	방송통신	통신사 통신기술
			운전	운전
			위생	위생 사역
			조리	조리
2. 지방 공무원	「지방공무원법」 제4조제4 항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 령」 제3조제1항	1) 행정	방호	방호
		2) 기술	위생	위생 사역
			조리	조리
			간호조무	간호조무
			시설관리	시설관리 조례로 정하 는 직류
			운전	운전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9조의2(취업지원의 신청) 법 제31조의2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력 서를 첨부한 후 국가보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제49조의2(취업지원의 신청)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법 제32조에 따라 일반직공 무원 및 <u>관리운영직군에 속하 는 일반군무원(이하 “일반직 공무원등”이라 한다)</u> 특별채 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: <u>일반직공무 원등 특별채용 대상자</u> 추천 신청서	1. ----- ----- <u>일반군무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일반직공무 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</u> - 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50조(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 원 등) ① 법 제32조제1항 전단 에서 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반직공무원</u> ”이란 <u>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을 말한다.</u>	제50조(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 원 등) ① 법 제32조제1항 전단 에서 “ <u>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 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</u> ”이란 <u>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과 「군무원인사법 시행령」 별 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에 속 하는 일반군무원(이하 “일반직</u>

② (생 략)
제55조(보훈특별고용 등) ① (생 략)
②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받은 업체등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<단서 신설>

③ ~ ⑥ (생 략)
제56조(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)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은 35세까지로 한다. 다만, 35세 이전에 제49조의2제2호에 따라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취업희망 신청서에 한정하여 38세까지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한다.
제57조(6·25전몰·순직군경 자

공무원등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② (현행과 같음)
제55조(보훈특별고용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-----

다만, 채용시험 실시 등 부득이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56조(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 연령) ① -----
----- 39세
----- <단서 삭제>
제57조(6·25전몰·순직군경 자

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 자로서 <u>36세</u> 이후에 보훈특별고 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은 자 에게는 더 이상 보훈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지 아니한 다. 다만, 업체등의 폐업, 휴업 또는 합병, 그 밖에 본인에게 책 임이 없는 사유로 퇴직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제59조(채용신체검사의 판정) ① 법 제35조에 따른 전상군경, 공 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 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에 대 한 채용신체검사 합격판정은 <u>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중 합병원</u>에서 한다. ② (생 략)	녀에 대한 취업지원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 <u>40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. ----- ----- ----- -----. 제59조(채용신체검사의 판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가 목에 따른 병원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</u>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651